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0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7546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피 고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2. 4. 6. 원고 A, B에게 한 취득세 49,880,400원, 지방교육세 4,988,040원, 농어촌특별세 2,494,02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4. 6. 원고 주식회사 C에게 한 취득세 50,105,080원, 지방교육세 5,010,500원, 농어촌특별세 2,505,2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및 매수자 변경 경위

1) 원고 A, 원고 B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14. 설립된 회사로, 2018. 9. 20. 대표이사로 원고 A, 사내이사로 원고 A과 원고 B이 각 등기되었다.

2) 원고 A은 2015. 9. 17. D 주식회사(위탁자 및 시공사, 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매도인, 이하 'E'이라 한다)와 ○○시 ○○구 F건물 G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제1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9. 8. 5. 제1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8. 12. 원고 B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 A의 권리·의무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승계하였다.

3) 원고 B은 2015. 9. 17. ○○시 ○○구 F건물 G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제2공급계약'이라 하고 제1공급계약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8. 12. 원고 C이 제2부동산에 관한 원고 B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납부



1) 원고 A, B은 2019. 9. 27. 제1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고 제1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2015.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취득가액(1,247,0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49,880,400원, 농어촌특별세 2,494,020원, 지방교육세 4,988,040원 합계 57,362,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C도 2019. 9. 27. 제2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고 제2부동산에 관한 2015.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취득가액(1,252,62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50,105,080원, 농어촌특별세 2,505,250원, 지방교육세 5,010,500원 합계 57,620,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다. 민사소송의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원고 A, B은 제1부동산, 원고 C은 제2부동산에 해당하나, 편의상 구분하지 않고 이와 같이 기재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9. 8. 21. D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9. 9. 6.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하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2019. 9.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애초 분양받을 때와 현재의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상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귀사가 지정한 잔금일이 임박하여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잔금을 지급하나, 이는 법상 인정되는 계약취소권, 계약해제권 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잔금을 치르더라도 추후 법상 인정되는 계약취소권, 계약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을 통고합니다.

2)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9. 10. 21. E 주식회사 및 D에 'E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제7조 제3항(이하 '관련 해제조항'이라 한다)¹⁾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를 통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들 등은 2019. 11. 29. D을 상대로 계약해제(선택적으로 관련 해제조항에 따른 해제 또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 주장)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535,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4) 관련 민사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1. 12. 8. 관련 해제조항에 따른 원고들의 해제청구를 인용하면서 'D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기지급 분양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1) 원고들이 제출한 공급계약서(갑 제3, 7호증)의 일부만 제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제7조 제3항에 '원고들은 E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기는 2022. 1. 27.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D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은 2022. 2. 17. 관련 민사사건 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2. 4. 6.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조건 없는 완전한 취득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연체이자 발생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해제청구가 받아들여졌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앞서 본 계약 해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취득세에는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이 있다면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2019. 9.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이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의 관련 해제조항에 기초한 해제주장이 인용되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의 조세채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성립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취득세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취득행위란 조건 없는 완전한 취득행위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경우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통상의 계약 해제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2019. 9. 25.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보아도 원고들이 계약취소권, 계약해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일 뿐,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다) 무엇보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사인과의 부동산 매매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본문),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목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 일정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은 위 제2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또는



취득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일정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명확히 존재한다 할 것이고,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라) 원고들은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을 주장하기도 하나,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위세(유통세)로서 소득이 유통되는 국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을 얻는 국면에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과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의 소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뿐만 아니라 이처럼 거래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담세력의 지표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행위세의 성격을 지닌 세목의 제정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취득행위 자체를 지표로 측정된 담세력이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 등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처럼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통상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즉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류·탈루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정청구 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과세표준금액에 오기나 탈루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환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2호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제3



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구 지방세기본법이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에 있는 점, 조문체계상 위 시행령의 사유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를 전제로 위임되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계약 성립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로서 그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최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경을 가져와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해석에 앞서 본 취득세의 행위세(유통세)로서의 특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의 관련 해제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공급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와 동일하게 계약 해제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에서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하게 취득세의 경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구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과 달리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박○○

판사 이○○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